

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(SH)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(SH)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제4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·주택재개발사업·주택재건축사업·도시환경정비사업
9. 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(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)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<p>제18조(사업)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토지의 취득, 개발 및 공급 2. 주택의 건설, 개량, 공급, 임대 및 관리 3.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, 개량, 공급 4.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5. 도시기반시설 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6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. 시장의 승인을 얻은 해외건설사업 8.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해당하는 외자 유치 및 외국인 투자사업 9. 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 10. 기타 도시개발과 관련이 있는 사업 	<p>제18조(사업) ①(현행과 같음) 1. ~ 3(현행과 같음)</p> <p>4.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의 규정 <u>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·주택재개발사업·주택재건축사업·도시환경정비사업</u></p> <p>5. ~ 8(현행과 같음)</p> <p>9. 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 <u>(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).</u></p> <p>10. (현행과 같음)</p>

(다음 페이지 계속)